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61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2024. 2. 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4. 7. 3. 접수 제6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간이설시의 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양시호

별지